

# WHO참석보고

## WHO 산업보건 기획자문위원회 참가보고서

### 회장조규상

본 위원회는 매 5년마다 세계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로서 WHO 본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8년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본 위원회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로서 10개국의 전문가, 2개 국제기구대표 그리고 15명의 WHO 전문위원이 참석하였다.

본 위원회는 WHO사무차장 Hu ching-Li의 인사로서 시작되었다. 그는 제 40차 세계보건총회에서의 결의된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근로조건의 발전과 포괄적인 일차보건사업의 발전과 보건에서 소외된 근로자들의 문제들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산업발전에 따른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위원회는 의장으로 소련 모스크바 국립연구소장인 N.F. Izmero 교수를, 부의장에는 미국 NIOSH연구소장 J.D. millar 박사를 그리고 서기로서는 핀란드의 국립산업보건연구소장 J.H.Rantanen 박사를 선출하였다.

본 위원회 의제는 ① WHO 기획에 대한 조력 ② 실행계획을 위한 수위결정의 조언 ③ 새로운 방향설정에 대한 인정 ④ 기획의 검토와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에 대한 조언이었다.

일반적 토론에 들어가 오늘날 산업보건의 문제는 후진국가들에 있어서는 정보의 결여, 높은 질병의 이환율과 사망율이 큰 문제로서 역학적 조사와 정보체계의 확립등 기본문제를 안고 있으며 선진국가들에 있어서는 기계의 자동화, 여성근로자의 증가, 인간공학적이며 정신적인 제 문제들이 있고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의 개선이 연구과제임을 지적하였다.

그간 근로자의 보건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ILO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정(勞使政)의 협력하에서 제반문제를 다루어 왔고 WHO는 순수한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의 입장에서 제반과제를 검토하여 왔는데 나라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고 행정도 보건과 노동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 분야 발전에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현황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 전반적으로 볼 때 80년대의 산업보건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위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는데 1987년 제 4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보건에서 소외된 근로자군에 대한 산업보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78년 Alma-Ata에서 결정된 일차보건사업의 방법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세계에는 아직도 80%의 근로자들이 보건사업에서 소외

되어 있어 이들의 생활과 더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보건의 방향은 ① 노동조건의 향상 ② 노동환경과 위험에 대한 관리 ③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ILO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환경 조건과 작업의 적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WHO는 HFA 2000 (서기 2000년까지 모든이에게 보건의 혜택이 가도록 한다)의 기본정책에 따라 ① 보건에서 소외된 근로자에게 ② 모든이가 협력하는 일차보건사업의 조직을 통하여 ③ 각국 나름대로의 표본적 조직을 마련하여 ④ 모든 분야의 협력으로서 산업보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보건에 있어 훈련은 중요한 부문으로서 훈련을 위한 교과과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은 예방적이며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차보건사업의 접근방식에 의하여 모든 기술분야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받은 요원은 이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분야의 참여로서 전문적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연구는 산업보건의 발전의 도구로서 ① 위해 발생의 원인분석과 감시 ② 근로자의 건강파악 ③ 예방 및 관리방법의 개발등 분야에 대하여 역학적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순위는 국가의 중요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하며 결과는 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각국마다 산업보건의 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후진국에서는 오래된 선진국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 부적합한 것이 많다. 예컨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WHO는 이를 위하여 표본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기술이전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대책을 후진국에서는 강화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의 역사를 보건대 초기에는 감독관에 의한 감독행정에 주력을 두었고 위반한 사업장은 별칙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을 극히 제한된 감독관에 의하여 다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후 산재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보상으로서 피해자를 돋는 법이 마련되었으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산업보건은 새로운 조직과 계획 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건이 미치고 건강이 보호증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보건의 성과는 근로자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법의 뒷바침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홍보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내외 기구의 이용이 필요하다.

산업보건계획의 목표는 근로자 특히 보호를 요하는 연소자, 여성노인군에 대한 건강보호와 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보건의 기술과 근로자를 위한 보건 전달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보건계획은 1955년 까지 적어도 70%의 국가들에 있어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조건의 표준화된 보고체계의 확립 : 이를 위하여 WHO는 1991년 까지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1955년까지는 적어도 50%의 국가들에서 이 보고체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일차보건사업 요원의 훈련지원 : 이를 위하여 WHO는 1991년까지 이들 요원을 위한 교육과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1995년까지에는 70%의 국가에 있어 이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3. 근로자들의 보건계획에의 참여 : 이를 위하여 노조와 ILO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여 1991년까지는 교육과 건강증진지침을 마련하고 1995년까지는 70%의 국가들에 있어 근로자들이 건강계획에 참여하며 또한 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

4. 보건에서 소외되거나 건강의 피해를 받기 쉬운 근로자 대상군을 위한 법적지원에 관한 특별지침의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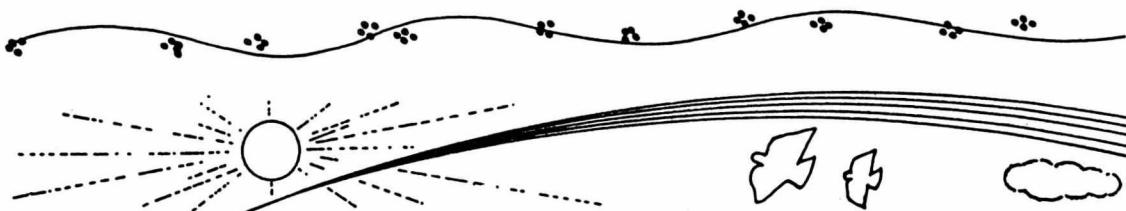
WHO는 ILO와 협력하여 1991년까지 적어도 6 가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1995년까지에는

적어도 5%의 국가들에서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이를 위한 활동과 지원 및 계획의 운영방법과 그리고 감시, 평가, 지침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서도 논의하였다.

이상의 위원회 계획을 통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업계획도 자명하다. 우리

는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신뢰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정확한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보건관리교육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도록 뒷바침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장마다 근로자들이 자진하여 건강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뒷바침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안

## 내

### ■ 제 12 차 아시아산업보건학회 ■

— ASIAN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

일 시 : 1988년 11월 18일 ~ 22일

장 소 : 인도, 봄베이

### ■ 산업보건사업의 새로운 견해와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

—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w Trends and Developments i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

일 시 : 1989년 10월 3일 ~ 6일

장 소 : 핀란드, Espoo

주최 :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IOH), Finland

협찬 : ILO, WHO, ICOH